

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(김홍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
----------	-------

발의일자	2023. 5. .
발 의 자	김홍섭, 이홍희, 박수자, 표주숙, 신재화, 신중양, 김향란, 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

1. 제안 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·시행(2022.1.13.)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입법 및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
- 거창군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,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·폐지, 의안 심사·처리, 법령해석 등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직무를 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고문의 위촉,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고문의 의무사항,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고문의 운영, 참석 회의 등 진행 사항을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마. 수당 및 소송비용, 자문실적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,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 시
- 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
- 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05. 23 ~ 05. 30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입법 및 법률 고문) 거창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입법 및 법률 고문(이하 “고문”이라 한다)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입법고문의 직무

- 가.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
- 나.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
- 다.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·처리에 관한 자문
- 라.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자문

2. 법률고문의 직무

- 가. 의회 안전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·적용에 관한 자문
- 나. 각종 이의신청, 행정심판 등 쟁송사항에 관한 자문
- 다.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
- 라.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

제3조(위촉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으며, 고문은 거창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.

- 1.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
 - 2.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
 - 3.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
 - 4. 법무·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-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승낙서(별지 제1호서식)와 청렴서약서(별지 제2호서식)를 받은 다음 위촉장(별지 제3호서식)을 교부한다.

제4조(위촉기간)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

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.

제5조(의무 등) ① 고문은 제2조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
2. 금품수수,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
3.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
4.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
5. 그 밖에 의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

③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해촉)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고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제5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한 경우
3.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4.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함으로써 의회 및 의회위원의 의정활동(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)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5.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운영 등) ① 의회위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해야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의

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등) ① 의장은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「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자문실적부 작성)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실적부(별지 제4호서식)를 작성하여 갖추두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승 낙 서

소 속		직 위	
성 명		생년월일	
연 락 처 (사무실)		휴 대 폰	
주 소			
이 메 일			

본인은 「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입법(법률)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승 낙 자 (서명 또는 인)

거창군의회의회장 귀하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본인은 거창군의회 입법(법률)고문직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인: (서명 또는 인)

거창군의회의회장 귀하

구 분	내 용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	거창군의회 입법(법률)고문직 위촉 및 자문·운영 등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생년월일, 소속(직위), 휴대전화, 주소, e-mail
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입법·법률 고문직 위촉 후 임기기간 동안 ※ 단, '위원 이력 정보'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. · 보존기간: 해촉 후 3년 · 보존사유: 자문 활동 내역 및 위·해촉 내역 조회
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	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거창군의회 입법(법률)고문직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	

청 럽 서 약 서

본인은 「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거창
군의회 입법(법률)고문직에 위촉됨에 따라 입법 및 법률 자문, 소송수행 등에 맡은
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거창군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
2. 금품수수,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
3.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
4.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
5. 그 밖에 거창군의회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

년 월 일

서약자 소 속:

성 명:

(서명 또는 인)

거창군의회회의장 귀하

위 축 장

소속:

직위:

성명:

귀하를 「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라
거창군의회 입법(법률)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: 20 . . . ~ 20 . . .)

년 월 일

거창군의회 의장 [직인]

자 문 실 적 부

구분 종류	건 명	의뢰일	의뢰내용	의뢰인	고 문 소속·성명	회신일	회신내용	비 고

※ 종류란에는 입법자문, 법률자문, 소송사건,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